

의안번호	2126635
의 퇴 인	김진표의원
회 답 일	2024.04.26.
추 계 번호	24D023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헌법개정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억 7,400만원, 2029년 18억 4,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9억 8,200만원(연평균 17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헌법개정 절차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안 제6조 등)	1,774	1,761	1,788	1,815	1,843	8,982	1,796

- 주: 1. 본 추계 결과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및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의 위원 구성 규모 및 개최횟수 등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위원 구성 및 개최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지원단 규모를 과 단위 수준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지원단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본 추계 결과는 교육비 등의 경우 교육대상자를 500명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교육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4. 제정안 중 일부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으로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헌법특별위원회의 직무)		헌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의 방향과 조문별 내용에 관한 논의 등의 직무를 수행함	의무규정
2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안 제6조(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헌법개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안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3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	안 제8조(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의 설치)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 500명 이상의 국민참여위원으로 구성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둠	의무규정

		안 제9조(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국회의장은 주민등록자료를 토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후보자명부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국민참여위원을 위촉함	
4	안 제10조(지원단)		국민참여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지원단을 둠	의무규정
5	안 제12조(수당 및 실비변상)		자문위원회 위원 및 국민참여위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3조(홍보와 교육)		국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헌법특별위원회의의 직무)		×	연계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에 따라 본 비용추계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2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안 제6조(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의 설치)	○	—
		안 제7조(자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	
3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안 제8조(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의 설치)	○	—
		안 제9조(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	—
4	안 제10조(지원단)		○	—
5	안 제12조(수당 및 실비변상)		○	—
6	안 제13조(홍보와 교육)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연계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헌법특별위원회 설치(안 제45조의 2)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에 따라 본 비용추계서에는 이를 추계하지 않음
- 추계에서는 안 제10조에 따른 지원단 및 안 제13조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 인력조정이 아닌 신규인력을 증원·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에서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 및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이하 “참여회의”라 함) 위원수당 등, 참여회의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함) 운영비,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비 등·홍보비를 추계함

가. 자문위원회 위원수당등(안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 (자문위원회 위원 수) 안 제7조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자문위원의 구성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최소인원인 30명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자문위원회를 헌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계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법특별위원회 기본경비 및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및 수당등) 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를 알 수 없으므로, 자문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당과 교통비 및 그 밖의 실비(이하 “위원수당등”이

라 함) 등은 1회 25만원¹⁾으로 산출함

-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당등은 추계기간 동안 1억5천만원으로 추정됨
 - (자문위원회) 연 3,000만원=30명×25만원×4회(분기별 1회)

[표 2]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등	30	30	30	30	30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민참여회의 참여위원수당등(안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 (참여위원의 수) 안 제9조에 따르면 참여위원은 5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참여위원의 구성을 알 수 없으므로 참여위원의 수는 최소인원인 500명으로 가정함
- (참여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 등) 안 제8조 및 제9조는 참여회의를 설치 및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참여회의 개최 횟수를 알 수 없으므로,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당과 교통비 및 그 밖의 실비(이하 “참여회의 위원수당 등”이라 함) 등은 1회당 25만원으로 산출함
 - 참여회의 위원수당 등은 추계기간 동안 6억 2,500만원으로 추정됨
 - (참여회의) 연 1억 2,500만원=500명×25만원×연 1회

1)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표 3] 국민참여회의 위원수당 등(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참여회의 위원 수당등	125	125	125	125	125	6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지원단 운영비(안 제10조)

□ (지원단 인력) 참여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단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²⁾,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상 최소 부서(과)³⁾ 단위 규모를 가정하여 추정함

- 안 제8조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고려하여 과장(4급) 1명, 담당(5급) 2명, 주무관(6급) 4명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함
 - － 담당(5급) 2명은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하여 국민참여위원의 공론조사나 의견을 요청한 사항 담당 1명, 국민참여회의가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사항 담당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담당별로 주무관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지원단(과 단위)의 직급별 인원(추정)

(단위: 명)

구 분	4급	5급	6급	계
직급별 인원	1	2	4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국회 예산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는 기본 봉급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 4.)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⁴⁾을 적용하고, 수당(입법수당 등⁵⁾)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안 제10조에 따르면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상 인사과 및 운영지원과가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4) 2022~2024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를 적용

5)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표 5] 지원단(과단위) 보수(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수	553	561	569	577	585	2,8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등) 지원단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기관부담금⁶⁾ 및 자산취득비와 지원단의 기본경비 및 사업비를 추계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2024년 4월) 기관부담 요율⁷⁾을 적용하고, 사업비와 기본경비는 국회사무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⁸⁾,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⁹⁾을 적용함
- 자산취득비는 2024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1명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 4.)한 정부기관 자산취득비 4,806,000원(2024년 기준)을 적용함

[표 6] 지원단(과단위) 기관부담금 등(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관부담금	72	74	76	77	79	386
기본경비	44	45	45	46	47	228
사업비	427	433	439	446	452	2,197
자산취득비	34	0	0	0	0	34
합계	578	552	561	569	578	2,8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수와 기관부담금 등을 합한 지원단 운영비는 추계기간 동안 56억 8,200만원으로 추정됨

6)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의미함

7)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4. 4.)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기관부담률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8) 국회사무처 2024년도 인건비(3,503억 7,400만원) 대비 사업비(2,706억 8,700만원) 비율인 약 77%임

9) 국회사무처 2024년도 인건비(3,503억 7,400만원) 대비 기본경비(273억 1,000만원) 비율인 약 8%임

[표 7] 지원단(과단위)의 운영비(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운영비 (보수+기관부담금 등)	1,131	1,113	1,129	1,146	1,163	5,6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비 등·홍보비(안 제13조)

□ (교육비 등) 헌법개정에 대한 교육비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실무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함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교육대상자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안 제9조제1항에 국민참여위원의 수가 5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1년 동안 교육대상자는 500명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현재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정연수 1명당 단가를 곱하여 교육비를 산출함
 - － 시민의정연수 단가는 2022년과 2023년 평균인 13만 7,954원을 적용¹⁰⁾
- 동 교육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¹⁾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8]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비(추정):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교육비(A×B, 백만원)	72	74	75	77	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건비등을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음
 - － 2024년 국회 예산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는 기본 봉급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 4.)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수당(입법수당 등¹²⁾)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10) 시민의정연수 예산은 2022년 1억 2,140만원, 2023년 예산은 1억 1,100만원이었으며, 교육대상은 2022년 1,167명, 2023년 648명임

11) 2025년 2.2%, 2026년 2.2%, 2027년 이후부터는 2.1%

12)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

- 기관부담금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는 2025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 4.)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표 9]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인건비 등(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보수	66	67	67	68	69
기관부담금	9	9	9	9	9
자산취득비	5	0	0	0	0
합 계	79	75	76	78	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비 등은 추계기간 동안 7억 6,500만원으로 추정됨

[표 10]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비 등(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교육비	72	74	75	77	79	377
인건비 등	79	75	76	78	79	387
합계	152	149	152	155	157	7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홍보비) 2024년 국회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정활동광고 매체집행으로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예산을 헌법개정 관련 홍보비용으로 가정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계기간 동안 17억 6,000만원으로 추정됨

- 그 밖에 국회온라인미디어¹³⁾와 국회방송TV¹⁴⁾를 통해 기존 예산 범위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홍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에서의 홍보비는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광고 비용만을 추계함

금,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13) 2024년 예산기준 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의 내역사업으로 '국회온라인미디어(국회뉴스ON 등) 운영'에 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동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등으로 7억 1,200만원이 편성됨

14) 2023년 예산기준 국회방송운영(2036-300)의 내역사업으로 '프로그램 직접제작' 24억 7,900만원, '외주제작' 26억 3,900만원, '프로그램 구입' 10억 4,300만원 등이 편성됨

[표 11]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비(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홍보비	337	345	352	359	367	1,7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교육비 등 및 홍보비는 추계기간 동안 25억 2,500만원으로 추정됨

[표 12]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비등·홍보비(추정):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교육비등 및 홍보비	489	494	504	514	524	2,5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추계결과, 헌법개정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억 7,400만원, 2029년 18억 4,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9억 8,200만원(연평균 17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문위원회 위원수당등	30	30	30	30	30	150
참여회의 위원수당등	125	125	125	125	125	625
지원단 운영비	1,131	1,113	1,129	1,146	1,163	5,682
교육비등 및 홍보비	489	494	504	514	524	2,525
합 계	1,774	1,761	1,788	1,815	1,843	8,9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 결과는 자문위원회 및 참여회의 위원 구성 규모 및 개최횟수 등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위원 구성 및 개최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추계 결과는 지원단 규모를 과 단위 수준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지원단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추계 결과는 교육비 등의 경우 교육대상자를 500명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교육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 중 일부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으로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